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부과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 제1호	250	400	500
나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2호	150	250	500
다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250	400	500
라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제3호	150	250	500